장애평등정책법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7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김종양

조경태 · 이양수 · 임종득

김 건ㆍ이성권ㆍ주진우

김위상 • 백종헌 • 김은혜

최수진 • 유상범 • 김대식

이만희 • 김예지 • 최은석

배준영 · 서미화 의원

(20일)

제안이유

지난 40여 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해 왔음. 이와 같은 노력은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고용률, 월평균 소득 등 주요 통계지표 상 열악한 상태이고, 교육 수준, 여가생활 참여 등 모든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지못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 했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 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 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춰나갈 필요성 이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한 실정임.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애주류화를 제도화하고 장애평등을실현해 나아가야 할 것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달성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장애인지 예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장애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및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라. 장애영향평가를 위해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 및 지방장애영향평 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장애평등정책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지 예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장애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 2. "장애평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의 장애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 3. "장애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편성·집행,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장애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지 예산과 장애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지 예산과 장애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장애인지 예산 등

- 제5조(장애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障礙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장애평등지표 및 지역장애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종류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장애 종류별로 구분한 통계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

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 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장애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지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장애인지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장애평등지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의 장애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장애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장애평등 의식·문화 및 장애인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장애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장애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장애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 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장애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장애

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장애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장애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장애평등지수 및 지역장애평등지수 조사 결과, 장애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장애평등지표 및 지역장애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장애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장애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장애영향평가

제9조(장애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폐지를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영 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

여는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장애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장애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영향평가서의 검 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장애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특정장애영향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 시행 중인 법령
 - 2. 제9조에 따른 대상정책 중 장애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정책에 대하여는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특정장애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 시행 중인 조례 규칙
 -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평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평등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5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특정장애영향평가의 결과 장애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정책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장애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 1. 장애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장애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3. 장애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4. 장애영향평가결과와 장애인지 예산서 또는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 5. 장애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장애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 소속으로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8조(장애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2. 제9조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제12조에 따른 장애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 5.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 6. 제19조에 따른 장애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장애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 여 장애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장애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장애영향평가 자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애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1조(장애영향평가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애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장애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장애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장애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영 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장애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등을 위하여 장애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